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 6. 21 개정됨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율을 경북도 안과 같이 조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 삭제
나. 대지분할시 건축법 제49조 ⇒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변경
다. 공유재산심의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및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 삭제
라.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19조의2)
마.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방법 신설(안 제22조의2)
바. 매각대금 납부시 이자율 연 4% ⇒ 연 3%변경(안 제38조)
사. 관사관리에서 1급 관사 삭제
아. 변상금 납부시 연 3% 이자 가산(안 제63조)
차. 과오납금 반환시 연 3%이자 가산(안 제6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13. 11. 06 ~ 11. 26)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제외
바.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용료의 납부방법)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범위안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4회 이내 분납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를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군수”로 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56조 단서 중 “1급내지2급”을 각각 “2급”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년 8회”를 “1년 3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 12회”를 “1년 4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분납시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영 제82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업무) ①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 제>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사용료의 납부방법)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범위안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4회 이내 분납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3퍼센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3퍼센트----------.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3퍼센트---------- ----------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3퍼센트----------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3퍼센트----------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군수 ---------- ---------- ----------.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관사의 구분) ----------.	제51조(관사의 구분)----------.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 ----- 2급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 (생 략) 2. ----------(1급내지2급 ----------) 3. ----------(1급내지 2급 -------) 4. ----------(1급내지2급 --------) 5. --------(1급내지 2급 ----------) 6. -----(1급내지 2급 ----------) 7. -----(1급내지 2급 ----------) 8. ----------(1급내지 2급----------)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 (현행과 같음) 2. ----------(2급 ----------) 3. ----------(2급----------) 4. ----------(2급 ----------) 5. ----------(2급 ----------) 6. -----(2급 ----------) 7. -----(2급 ----------) 8. ----------(2급 ----------)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1.<삭 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 2회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 1년 3회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4. ---------- 1년 4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분납시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2(과오납금) 영 제82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은 연3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